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2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8.
발의자 : 박정 · 김해영 · 황주홍
윤후덕 · 서영교 · 신경민
권칠승 · 정인화 · 박광온
안규백 · 이철희 · 김종훈
박재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
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교육 및 훈련) ① 국민안전처장관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13조(교육 및 훈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이 경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